



소방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6.] [대통령령 제32313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소방청 (대응총괄과-총괄,소방활동,소방력동원) 044-205-7562,7572

소방청 (119종합상황실-119종합상황실 운영) 044-205-7082

소방청 (보건안전담당관-손실보상) 044-205-7412

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-소방용수, 화재조사, 의용소방대) 044-205-7472,7476,7480

소방청 (구조과-생활안전활동) 044-205-7617

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-예방, 화재경계지구, 특수가연물, 소방안전원) 044-205-7442

소방청 (생활안전과-소방교육·훈련, 소방박물관, 소방안전교육사) 044-205-7666,7670,7667

소방청 (소방산업과-소방산업육성) 044-205-7502

제7조의1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)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(棟)으로 구성되고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 <개정 2021. 5. 4.>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

[본조신설 2018. 8. 7.]